

## 醫療政策의 最適理論 : 論評

梁 奉 玖\*

『經濟學研究』第32集에 실린 林陽澤先生任의 論文은 理論不在의 醫療서비스政策部門에 획기적인 指標로서의 값어치를 가질 뿐 아니라 그 理論的 깊이는 讀者로 하여금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할 程度였다. 특히 뿌리가 얕고 歷史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 保健醫療政策이 많은 課題를 안고 있는 즈음에 理論的으로 어떤 狀態가 最適(optimum)인가를 보여 줌으로써, 實際 政策決定에 곧바로 適用된다는 意味에서 라기 보다는 政策이 追求해 나가야 할 方向을 提示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價值을 附與할 수 있겠으며 論文準備過程에 있어서도 많은 努力과 時間이 所要되었음을 다루어진 여러 論題에서 엿볼 수 있었다.

最適統制理論(optimal control theory)을 分析의 基礎로 삼고서 目的函數(objective function)와 選擇變數(choice variables)를 使用하여 導出된 最適條件들은 그 展開過程에서는 別다른 論理上의 問題點은 없는것 같다. 다만 提示된 여러 函數들 중에서 筆者가 見解를 달리하는 部分이 몇 있어 本稿에서 이들에 對한 擬問을 提起해 보고자 한다. 우선 醫療서비스의 最適 受惠對象者數와 最適 資源投入量을 導出한 第二章에서 目的函數  $V$ 가 設定되었는데, 社會 全體的 經濟價値로 定義되는 函數에 健康한 사람을 產出하기 위하여 醫療서비스部門에 投入된 資源에 해당되는  $(S_2 \cdot R)$ 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醫療서비스를 받고 있는 患者가 生產過程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經濟的 價値가 없기때문에  $(S_1 \cdot I)$ 가 目的函數에서 除外되었음을 쉽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S_2 \cdot R)$ 이 目的函數에서 除外됨은 醫療서비스에 投入된 資源의 經濟價値가 제로임을 意味하며, 本文中에 設定된  $0 < S_2 < 1$ 의 條件을 考慮할 때  $(S_2 \cdot R)$ 이 零이 되는것은 全體資源인  $R$ 이 零일 때에만 可能하므로 이는 또한 目的函數  $V$ 중에서  $[\rho(1-S_2)R]$ 의 存在까지를 否定하는 根據가 될 수 있다. 만약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S_2 \cdot R)$ 이 目的函數에 包含될 경우 그 資源의 單位當 收益率을  $\rho$ 로 하든 하지 않든 間에 患者의 最適數  $(S_1^* \cdot I)$ 와 資源의 最適量  $(S_2^* \cdot R)$ 은 本文中의 式(24)나 (25)와는 相異할 것이며 그들을 通하여 導出되는一般的 意味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醫療保險 加入者の 最適條件를 論한 第三章에서는 個人的 效用函數인 式(25)와 制約函數(constraint)인 式(37)이 紹介되었는데 그중 個人的 醫療費負擔函數  $g_i = g(m_i)$ 와 그 一次微分인 總醫療費 負擔水準이 유발시키는 個人負擔의 限界費用  $g'(m_i)$ 에 關한 式(37)의 妥當性은 論해 보고자 한다. 本文에서  $m_i$ 는 總醫療支出水準이라 定義되어 있는데 全體 文脈으로 보아 個人負擔 醫療費支出과 組合負擔, 支出 醫療費를 合한 醫療費支出總額이 될 것이며  $g_i$  또한 醫療狀況  $i$ 가 發生할 境遇 個人負擔 醫療費支出額을 나타내므로  $g_i$ 과  $m_i$ 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單純 一次線型函數로 나타낼 수 있다.

$$g_i = g(m_i) = m_i - k_i$$

여기서

$k_i$ : 醫療的 狀況  $i$ 가 發生하였을 境遇, 組合이 補助할 醫療支出費 따라서  $m_i$ 가 유발시키는 個人負擔의 限界費用은 1이 되며 즉  $g'(m_i) \equiv [dg(m_i)/dm_i] = 1$ , 醫療保險加入者の 效用極大化를 위한 必要條件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artial U_i / \partial m_i = \partial U_i / \partial [R_0 - C - g(m_i)]$$

이것을 풀어 하자면 醫療保險加入者は 醫療的 狀況  $i$ 에 對한 總醫療支出額( $m_i$ )의 限界效用과 그의 純資產  $[R_0 - C - g(m_i)]$ 의 限界效用이一致할 때 그의 總效用을 極大化 시킬 수 있는 것이다.

上記된 必要條件이 本文中의 式(40)과 類似하면서도 相異한 形態를 取함은 本文에서는  $g_i$ 가  $m_i$ 의 增加函數라고 假定한 때문이며,  $g_i$ 와  $m_i$ 의 分明한 關係를 알고 있는 以上 本稿에서와 같이 單純線型函數로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妥當하지 않느냐고 反問해 본다.

마지막으로, 醫療保險의 最適政策을 論한 第四章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를 指適하고 싶다. 첫째로 註20)에서 醫療保險組合의 公共財(public good)의 性格에 關한 言及이 있었는데, 本 論評의 筆者는 醫療서어비스가 優良財(merit good)로 定義되는게 合當되지 않느냐는 質問을 하고 싶다. 公共財의 두 特性, nonrival in consumption과 nonexclusion이 醫療서어비스에 그대로 適用되기는 어려운 것 같으며 따라서 學校教育(education)과 같이 國民 누구나가 最少限의 惠擇을 누려야 하는 性質의 優良財로 간주되어져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둘째로, 最適政策을 論함에 있어 最適條件, 式(46)의 成立 與否를 2 가지 境遇로

나누었는데 그중 첫번째에서는  $m_i$  가同一하다고假定을 세웠다. 모든經濟모델이假定의根據위에서分析可能한만큼 웬만큼의假定은 오히려必要不可缺한 것이常例이나各醫療的狀況  $i$ 에對하여總醫療費負擔額  $m_i$  가同一하다는本文中の假定은現實의어떤保險判決下에서도正當化되기가 어려운것 같으며따라서式(51)에表記된條件도그意味를附與하기가 어렵다고하겠다.

세째로,本文中의式(42)에서  $g_i$ 는  $m_i$ 의一次函數라고假定되어 있는데,即  $g = g(m_i) = a + bm_i$ , 그렇다면組合負擔分支出(常數  $a$ 로 나타남.)이相異한醫療的狀況에도恒常一定함을意味하며이것은論理上無理가 있는函數選擇이아닌가생각된다. 따라서式(42)를出發點으로하면서最適政策에關하여論한第四章은그論理의妥當性에擬問이提起될수있겠으며適切한修正이要求된다고보아진다.

上記거론된여러問題點의基本은本論評의筆者が $m_i$ 나 $g_i$ 를比率로본것이아니고絕對額으로풀이하는데있으며本文의全體文脈이나式(41)에서原著者도그렇게풀이하였음을엿볼수있다. 그러나原著者は $m_i$ 나 $g_i$ 를費用의‘水準’으로表記함으로써分析이展開되었는바,水準이무엇을意味하는지에對한確實한解明이必要하리라본다.

비록筆者が몇가지擬問點에對하여論評을하였다지만,林先生任이最適理論을通하여이문學問의業績은높이評價해드리고싶으며學問의發展을念願하는經濟學徒로서이런類의論文이끊이지않고發表되기를祈願할따름이다.

### 參 考 文 獻

林陽澤, 醫療政策의最適理論, 『經濟學研究』, 第32集, 1984年12月.